연지공원 푸르지오 아파트(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문의 055)328-1400

※ 본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는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년 12월 20일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김해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김해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주택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을 모두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에 1년(2017.12.20. 이전부터 계속 거주)이상 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증여,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변경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시간 : 08:00~17:30)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함.)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 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기타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김해시가 아닌 기타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5.04.0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85㎡이하 주택은"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추첨제』가 적용되며, 85㎡초과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2016.08.1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2항에 의거 가점제 40%가 적용됩니다.
■ 2017. 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연지공원푸르지오.com)에 공개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아파트의 견본주택은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21–2번지에 설치되며, 홈페이지(www.연지공원푸르지오.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18년 12월 26일(수)	2018년 12월 27일(목)	2018년 12월 28일(금)	2019년 1월 7일(월)	2019년 1월 21일(월) ~ 2019년 1월 23일(수) 3일간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08:00 ~ 17:30)	개별조회(www.apt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소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견본주택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 45715호(2018.12.1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21–2번지외 1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지상 8~34층 10개동, 총 8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61세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5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8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05세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24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면적–㎡,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소계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면적	주거공용 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세대수		
민영주택	2018001325–01	84.9960A	84A	84.9960	24.6162	109.6122	54.3051	163.9173	44.9553	164	16	16	32	5	69	95	12
	2018001325–02	84.8621B	84B	84.8621	25.7136	110.5757	54.2194	164.7951	44.8845	179	17	18	35	4	74	105	8
	2018001325–03	84.9690C	84C	84.9690	24.8315	109.8005	54.2877	164.0882	44.9410	191	19	19	38	6	82	109	8
	2018001325–04	111.7134	111	111.7134	33.3568	145.0702	71.3751	216.4453	59.0865	77	–	7	–	3	10	67	3
	2018001325–05	114.8366A	114A	114.8366	32.2471	147.0837	73.3705	220.4542	60.7384	140	–	14	–	4	18	122	5
	2018001325–06	114.9353B	114B	114.9353	32.7477	147.6830	73.4337	221.1167	60.7906	63	–	6	–	2	8	55	2
	계									814	52	80	105	24	261	553	3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주택형	타입	동	공급 세대수	층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70%)							잔금 (2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차(10%) 2019.8.20	2차(10%) 2020.2.20	3차(10%) 2020.8.20.	4차(10%) 2021.2.22	5차(10%) 2021.6.21	6차(10%) 2021.9.23	7차(10%) 2021.12.20	입주 지정일
84.9960A	84A	105동 3호,4호 106동 3호 107동 1호 109동, 110동	164	최저가	164,810	259,290	424,100	42,410	42,410	42,410	42,410	42,410	42,410	42,410	42,410	84,820
				최고가 (다락형)	206,770	325,330	532,100	53,210	53,210	53,210	53,210	53,210	53,210	53,210	53,210	106,420
84.8621B	84B	101~106동 1호 107동 3호 108동 1호	179	최저가	157,030	247,070	404,100	40,410	40,410	40,410	40,410	40,410	40,410	40,410	40,410	80,820
				최고가 (다락형)	203,670	320,430	524,100	52,410	52,410	52,410	52,410	52,410	52,410	52,410	52,410	104,820
84.9690C	84C	101~108동 2호	191	최저가	150,620	236,980	387,600	38,760	38,760	38,760	38,760	38,760	38,760	38,760	38,760	77,520
				최고가 (다락형)	224,460	353,140	577,600	57,760	57,760	57,760	57,760	57,760	57,760	57,760	57,760	115,520
111.7134	111	101동 4호 103동 4호 108동 4호	77	최저가	203,749	320,551	524,300	52,430	52,430	52,430	52,430	52,430	52,430	52,430	52,430	104,860
				최고가 (다락형)	284,589	447,711	732,300	73,230	73,230	73,230	73,230	73,230	73,230	73,230	73,230	146,460
114.8366A	114A	101~104동 3호 108동 3호	140	최저가	212,307	333,993	546,300	54,630	54,630	54,630	54,630	54,630	54,630	54,630	54,630	109,260
				최고가 (다락형)	293,915	462,385	756,300	75,630	75,630	75,630	75,630	75,630	75,630	75,630	75,630	151,260
114.9353B	114B	102동 4호 104동 4호	63	최저가	220,075	346,225	566,300	56,630	56,630	56,630	56,630	56,630	56,630	56,630	56,630	113,260
				최고가 (다락형)	293,915	462,385	756,300	75,630	75,630	75,630	75,630	75,630	75,630	75,630	75,630	151,26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동의 최상층에는 다락형 유니트가 설치되며, 다락형 유니트는 별도의 타입으로 분리되어있지 않아, 선택하여 청약할 수 없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통유의사항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호실별 등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전용 85㎡초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유상옵션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등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별도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V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정

VI 계약 체결 및 입주

VII 별도품목 계약

VIII 유의 사항

IX 기타 계약자 안내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엠디엠플러스가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엠디엠플러스이고, 한국자산신탁(주)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중 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아래 '관리형토지신탁'에 관한 사항은 본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에 우선함.
• 본 사업은 위탁자인 ㈜엠디엠플러스,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 그리고 시공사인 ㈜대우건설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임.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는 '한국자산신탁(주)'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함.
•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주)엠디엠플러스 및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임. 본 공급계약 대상재산에 대한 시공상의 모든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후 하자를 불문하고, 오시공, 미시공 등을 포함)은 시공사가 부담하고 한국자산신탁(주)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음.
•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한국자산신탁(주)가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오시공, 미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인 (주)엠디엠플러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고, 공급 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위탁자겸 수익자 ㈜엠디엠플러스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함.
•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매도자의 하자책임, 소유권 이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엠디엠플러스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사업주체(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에 대하여 분양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음.
• 한국자산신탁(주)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제1순위 우선수익자 지급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자산신탁(주)에게는 발행 의무가 없으며, 발행은 ㈜엠디엠플러스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하기로 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이트타워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70012
• 사업방식 : 관리형 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변경승인번호 : 2018–공동주택관리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2018년 12월 7일))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체(시행사)	한국자산신탁(주)	110111–2196304
시행위탁사	㈜엠디엠플러스	110111–2638752
시공사	㈜대우건설	110111–2137895

■ 견본주택 :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21–2번지 ■ 홈페이지 : www.연지공원푸르지오.com ■ 분양문의 : 055–328–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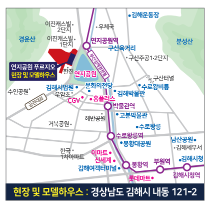

현장 및 모델하우스 :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21-2

PRUGIO 연지공원 푸르지오
공동주택 총 814세대 랜드마크 명품아파트
84A(164세대), 84B(179세대), 84C(191세대), 111(77세대), 114A(140세대), 114B(63세대)

055)328-1400

시행위탁 엠디엠플러스 시행 KAIT 한국자산신탁 시공 대우건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